
2021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지원 안내서

21. 2.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목 차

I. 21년도 지원 계획	1
1. 사업 개요	1
2. 선정 일정	2
II. 신청자격 및 방법	3
1. 신청 자격	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III. 과제 선정방안	5
IV. 사업비 산정안내	10
1. 공통사항	10
2. 시장 검증형	11
3. 보급 실증형	12
V. 문의처	13
VI. 주요 질문 및 답변	14

1

사업 개요

- (사업명)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 (지원규모) 국비 총 92억원 규모
 - 지원 과제별 상한액, 상한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선정·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규모, 추진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구분			지원예산
시장 검증형	물류		국비 총 37억원 내외
	웨어러블		
	의료	수술	
		재활	
	기타	협동로봇	
		언택트	
보급 실증형	물류		국비 총 55억원 내외
	웨어러블		
	의료	수술	
		재활	
	기타	협동로봇	
		언택트	

* 지원예산은 과제별 신청규모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협약일 ~ '21. 11. 30.

- * 선정 컨소시엄은 성과활용기간(사업 종료 후 3년) 중 지원 로봇을 활용하여야 하며, 성과활용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사업기간 중 소급 편성 불가
- * 성과활용기간 중 소요되는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 부담계획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결정 (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

2

선정 일정

-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과제 접수 수, 코로나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 컨소시엄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일정을 명기하였으며,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V. 과제 선정방안' 참고

<p>사업공고</p>	<p>2월 1일 ~ 3월 3일 (약 30일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명회(상담회) 개최('21.2월 예정) * 5개 권역(서울·경기,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예정 * 단 코로나 진행추이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p>접수</p>	<p>3월 2일 ~ 3월 3일 16:00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접수만 인정(제출 후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 제출) * 3월 3일(수)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제출본은 인정
<p>(1차) 서류심사</p>	<p>3월 2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p>(2차) 현장심사</p>	<p>~ 3월 3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공급기업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수요처 병행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p>(3차)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p>	<p>~ 3월 4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p>선정결과 통보</p>	<p>~ 3월 5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p>(4차)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p>	<p>4월 1주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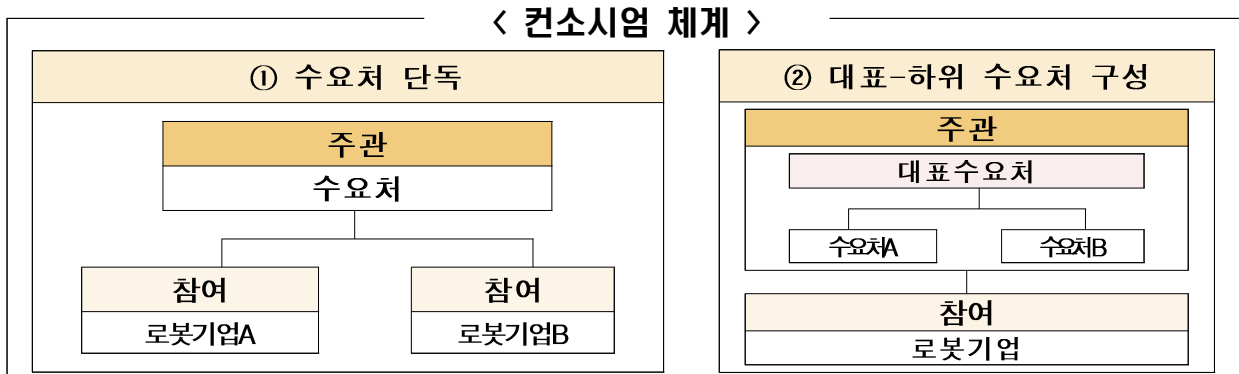
II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① 수요처 단독, ②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2가지 유형으로 추진 (자세한 예시는 Q&A 참고)



- '21.11월까지 로봇 제작 및 수요처 투입·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1년 연내 지방비, 수요기관 부담금,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협약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1.3.2(화) ~ '21.3.3(수), 16:00까지

* 마감시간은 3월 3일(수) 우체국 소인에 한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무효 처리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관련양식 작성 후 파일은 간사 이메일 제출하고, 원본 서류는 우편제출

- 지원분야별 담당자가 상이하니, V. 문의처(13p)를 확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혁신팀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방문) 접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만 허용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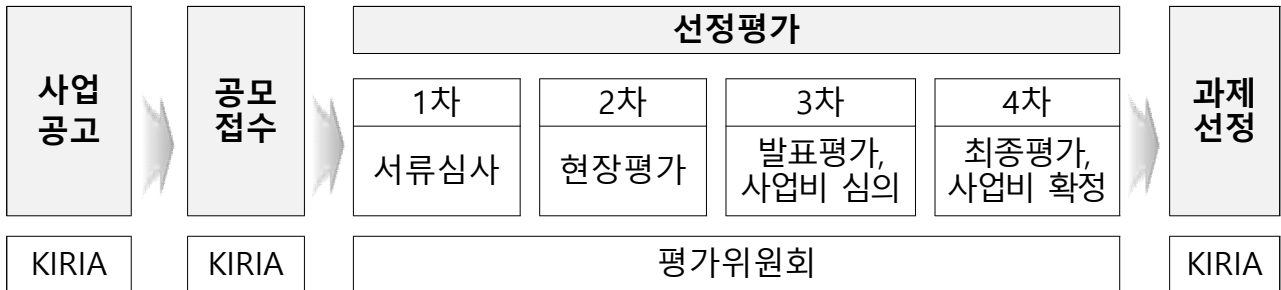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지자체	기관	기업	
1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각 1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	○	○	각 1부 (원본)
4	최근 3년간('17~'19)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	○	기업 수익 발생 법인만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수행기관별
8	참여의사 확약서	○	○	○	수행기관별
9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	파일 제출
10	사업비 매칭 확약서	○	○	○	대상기관 제출
1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	대상기관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필수,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4. 회계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최종 선정 컨소시엄(4월 1주차 예정) 대상 '20년 재무제표 확정본 요청 → 검토 예정

* 제출서류의 서식은 '(별첨) 제출서류 양식' 참고

Ⅲ 과제 선정방안



□ (1차 :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의 적정성										
신청자격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기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성실수행(조기종료포함) 과제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영리기관</th> <th>비영리기관</th> </tr> <tr> <th>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th> <th>주관기관</th> <th>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th> </tr> </thead> <tbody> <tr> <td>성실수행 과제수</td> <td>2</td> <td>3</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2	3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2	3	2									

○ 재무심사

구분	주요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p>	<p>▶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신청)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data-bbox="464 465 1003 517" style="width: 50%;">사전지원제외</th> <th data-bbox="1003 465 1439 517" style="width: 50%;">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64 517 1003 1532">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td> <td data-bbox="1003 517 1439 1532">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차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td> </tr> <tr> <td data-bbox="464 1532 1003 2027"> <p style="text-align: center;">조치</p> </td> <td data-bbox="1003 1532 1439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td> </tr> </tbody> </table>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차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검토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차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2차 : 현장심사) 로봇 기업 중심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별도의 탈락 컨소시엄 없음)

*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의견		
		적격	부적격	추가 검토
제품 적정성	◦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제시한 로봇가격은 적합한가?			
	◦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 (시장검증형)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으로 완성이 가능한가?			
수행능력	◦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민간부담금 매칭은 21년 연내 가능한가?			
	◦ (시장검증형) 로봇제작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파급효과	◦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장심사 의견				

□ (3차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액 심의

-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로봇전문가, 공공정책, 사업화 등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방법)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사업계획, 사업비, 제품, 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 후 질의응답을 실시
-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부여
 -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지원우선순위 부여
 - * '시장검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취득
목적의 부합성(10)	◦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로봇 제품의 적정성(20)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능력 보유 여부 (로봇의 우수성, 안전성 및 신뢰성,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 사업 기간 중 로봇실증, 검증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15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능력, 기대효과 등 (로봇기업 대상 피드백 제공 절차 및 계획, 수요인력 대상 제품사용 교육 계획, 사용대상자 선정절차, 사용평가 결과반영 프로세스 등)	20	
활용계획의 우수성(10)	◦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보급실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취득
목적의 부합성(10)	◦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실현 가능성	10	
	◦ 대상 로봇 가격 및 기능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 사업기간 중 로봇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획, 제품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운영능력, 홍보계획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0)	◦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10	
	◦ 사업기간 중 대상로봇 사업화, 시장 선점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10	
활용계획의 우수성(20)	◦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10	
합 계		100	

○ (결과통보) 주관기관 대상으로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추가검토 요청서' 수령

- 추가검토 요청서는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및 인정범위,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사안을 말하며, 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추가검토 요청서(안)

사업명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순위) ▶ (조정사업비) 		
추가검토 요청사항			

□ (4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3차 평가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금 확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지원우선순위 부여

* 단 평가점수 7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IV 사업비 산정 안내

1 공통사항

- (정산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안)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단위 : 천원)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참여기관 수</th> <th>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0개</td> <td>없음</td> </tr> <tr> <td>1개</td> <td>표준수수료의 10%</td> </tr> <tr> <td>2개 이상</td> <td>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td> </tr> </tbody> </table>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대상
- * 1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기준에 따라 추가산정할 것

- (이행보증보험) 지원국비의 0.281% 산정

- * 例) 총사업비 1억원 신청(국비 7천, 민간부담금 3천만원) ⇨ 7천만원의 0.281%인 약 20만원을 수수료 비목으로 산정

□ 반영 선택사항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 주요내용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보험료 금액은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단체보험사(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담당자에게 문의 (V. 문의처 참고)
 - * 보험료는 제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제공

- 로봇제작비용(재료비)과 수요처 도입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비용(연구장비 및 시설비)으로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수수료(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는 필수 반영 사항으로, 해당 비용을 포함한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내 편성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비고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제작비용) 로봇 제작원가(HW, SW, 커스터마이징) 인정 * 수요처에 도입하기 위하여 로봇 자체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목에 산정 * 향후 정산시 로봇제작원가가 상이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 	(필수) 총사업비 80% 이상 산정
	연구장비 및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스터마이징비용) 로봇을 설치(도입)하기 위한 수요처 맞춤형 로봇 도입비용 * 로봇 자체의 커스터마이징 외 수요처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 산정 (설비 구축, 웹페이지 제작 등 포함) 	
연구 활동비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 하단의 수수료 산정(안)을 참고하여 산정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7% 산정 	필수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임차비, 현수막 제작비 등 행사(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와 관련된 비용 * 관련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에서 산정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산정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평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 시 지급되는 수당 * 여비, 평가수당, 감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인력 사용 시 활용하는 비용 	
	인쇄 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한 인쇄, 제본 활용비용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력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 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 및 비품, 소모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시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특근 매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 (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인건비	기본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간접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지원경비 	10% 이내

3

보급 실증형

- 사업비 편성시 로봇 도입비용과 필수 수수료(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만 계상 가능함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연구장비 및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도입비용) 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서, 실제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 * 로봇 판매가는 로봇 HW, SW,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 활동비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필수사항) * 위탁정산수수료 : 하단의 수수료 산정(안)을 참고하여 산정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7% 산정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선택사항)

- 단 로봇에 따라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해당 비용의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추가비목을 산정하는 경우 보급실증형(11p)의 사업비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방식

구분	총계(A+B)	국비(A)	민간부담금(B)
로봇 가격, 필수 수수료	5억원	3.5억원	1.5억원
컨소시엄 필요비용	1억원	-	1억원
총 부담금	6억원	3.5억원	2.5억원

□ 사업내용, 지원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① 물류	이현민 책임	053-210-9667	hmlee@kiria.org
② 웨어러블, 언택트	류주리 선임	053-210-9668	juri1219@kiria.org
③ 재활	최은미 선임	053-210-9663	eunmi@kiria.org
④ 수술, 협동	류지호 수석	053-210-9662	thanks@kiria.org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관련 문의

- * (보험료 책정 방법) ① 단체보험사와 협력된 지자체 확인(붙임 참고)
 ⇨ ②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보험료 책정 요청(단체보험사에 필요서류 송부)
 ⇨ ③ 대상 로봇에 대한 보험료 산정

○ 협력 지자체 목록 및 지원내용 (단 하기사항은 20년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비율	기업당 지원한도	총 지원예산
서울시	중소기업	20%	1	200
부산시	중소기업	20%	1	30
광주시	중소기업	20%	1	20
전라남도	중소기업	20%	1	10
전라북도	중소기업	20%	1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30%	2	50
제주도	중소기업	80%	1	24

* 대한상공회의소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비율	기업당 지원한도	총 지원예산
서울시	중소기업	20%	1	40
부산시	중소기업	20%	1	30
대구시	중소기업	20%	1	80
경기도	중소기업	20%	1	30
충청남도	중소기업	20%	1	7.5

○ 기관별 담당자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고
중소기업중앙회	강민진 사원	02-2124-4349	kangminjin@kbiz.or.kr	단체보험사
대한상공회의소	박미숙 차장	02-6050-3876	miso@korcham.net	단체보험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현아 책임	053-210-9552	hakim@kiria.org	담당자

Q1. 시장 검증형은 어떤 사업인가요?

A1. '시장 검증형 사업'은 아직 시장에 판매실적이 없거나 적은 로봇제품, 혹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① 로봇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전 실제 사용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 ② 기존 고령자 중심으로 반려로봇을 판매하던 업체가 장애인 대상으로 사업 확장을 원하는 경우, ③ 기존 판매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리스·렌탈 방식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앞서 기술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보급 실증형은 어떤 사업인가요?

A2. '보급 실증형 사업'은 시장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사용자 확대 및 기업들의 Track-record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3. 분야별 지원 예산은 어느정도인가요?

A3.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의 지원 국비는 총 92억원으로, 시장검증형은 국비 37억원, 보급실증형은 국비 55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입니다. 과제의 지원분야(물류, 웨어러블, 의료, 기타) 별 지원예산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규모 및 추진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Q4.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4. 서비스 로봇은 로봇의 특성에 따라 가격대가 넓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예산의 상한·하한선은 별도로 없으며, 과제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Q5. 다양한 유형의 지원분야가 있는데, 유형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동일 수요처에 2개 유형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기획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 例) 음식점에서 물류로봇을 이용한 음식물 배송과 협동로봇을 활용한 음식물 조리 로봇을 동시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 분야와 협동로봇 분야에 동시 신청 가능

Q6. 한 개의 공급기업이 동일 분야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6.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다른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제품·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수요처가 해외 등으로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이 동일한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7. 보급 실증형 사업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나요? (로봇보급사업('11~'19),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18~'20))

A7. 참여 가능합니다.

단 21년 보급 실증형 과제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로봇기업은 이후 22년부터 동일한 제품과 BM로 수요처만 변경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8.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등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9.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9. 가능합니다.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A9.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요처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로봇을 공급할 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10.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A10.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사업비 편성(집행)은 인정되지 않으나 필요시 국내 참여기업에서 직접적인 구매행위 등 역할 대행은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상에 해당내용 반영

Q11.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1.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2. 사업계획서 상 안전대책 방안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A12. 분량은 2페이지 내외로, 로봇 적용시 주의사항, 로봇 설치 후 모니터링, 필요시 실증 사전 공지 및 동의, 수요처 대상 로봇 기능 및 안전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例) (물류로봇) 로봇실증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방법,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법 등 / (수술로봇) 도입예정 로봇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선별 방법, 환자 사전동의지침, 수술로봇을 활용할 의사 교육 방법 및 체계 등

Q13. 수술로봇 특화센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A13. '수술로봇 특화센터'의 지정 목적 중 하나는, 수술로봇을 활용한 임상 데이터 및 트랙레코드 등을 축적하여 향후 관련 제도개선, 수가화 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수술로봇 특화센터는 성과활용 기간 종료(3년)후에도 진흥원의 다양한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Q14. 협동로봇의 서비스현장 적용 사업의 경우 가맹점, 직영점 모두에게 보급 가능한가요?

A14. 가능합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협의에 따라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Q15.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A15. 대기업인 경우에도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괄주관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만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16.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 매칭이 가능한가요?

A16. 별도 제한 없이 반드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로봇을 도입하는 수요기관의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괄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로봇도입기관의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17.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7. 국비는 로봇 제작비(로봇 도입비용)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나머지 비용들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내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이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로봇운영비용을 소급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컨소시엄은 사업 기획시 성과활용기간 중 로봇운영비용 부담계획 또한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8. 민간부담금은 현물 편성은 불가능한가요?

A18. 네, 현금 편성만 가능합니다.

Q18.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18.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요처 요구사항과 로봇활용 목적 등에 맞춘 제품 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Q19.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19.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으로 편성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Q20.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A20. 불가능합니다.

Q21.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A21.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사용하는 모든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Q22. 사업수행 중 발생한 부가세 환급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A22.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내 분기별로 해당 금액만큼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고환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Q23.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23.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가지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24.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 가능한가요?

A24.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의 판매는 사업결과물의 처분과 관계된 사항으로 불가능하며,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불가)

Q25.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A25. 네.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별도의 신규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26.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26.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27.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과 발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A27. 과제신청시 이행보증보험료는 총괄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 항목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국비 기준 0.281%)